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L J	기	관	의	장	
선					
람					

정기 제412호 2019. 2. 15(금)

입 법 예 고

장수군	보건의료원 보	그건사업과 공고	상수군 향우회 3 고 제2019—1호 고 제2019—2호	장수군	금연 장려 조	례 시행 규칙인	<u> </u> 입법예고	6
	고 시 고시 제 2019		서면 농촌중 심	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수립] 고시		21
장수구	공 고제 2019	- 126호 장	수군 공인 등록	(폐기) 공고 ·				28
상 우 군	공고 제 2019 -	- 130° F	로지정공고					29
회 람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5)

장수군 공고 제 2019 - 호

장수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장수군수

- □ 자치법규명
 - 장수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제정이유
 - 장수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원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 군과 향우회간의 적극적인 교류 ·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제412호

□ 주요내용

- 향우회 교류 및 지원 조례 제정 목적과 출향인, 향우회 정의 및 군과 향 우회간 교류 · 협력 사업 정의 (안 제1조 및 2조)
- 향우회 업무관장을 명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토록 함.(안 제3조)
-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명시함 (안 제5조)

□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9, 2, 7, ~ 2, 27, (20일간)

□ 의견제출

- 『장수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붙임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수(행정지원과)

- 팩 스: 063-350-570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행정팀(☎ 350-2139)에 문의바랍니다.

-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2. 장수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끝.

보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 번호: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출향인"이란「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3. "교류·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 동 관심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 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

제4조(지원내용)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군정 시책 홍보 사업
- 2. 군정발전을 위한 군과 향우회 간 문화ㆍ체육행사 및 간담회 등 지원

- 3. 군이 주최하는 행사 참여에 따른 차량 지원 및 고향 방문 초청행사 지원
- 4. 지역 농 · 특산물 판매 및 홍보 활성화 사업
- 5. 그 밖에 교류 및 협력활동 활성화 사업 등

제5조(포상) 군수는 군과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 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공고 제 2019 - 호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 규칙안 입법예고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장수군수

1. 자치법규명: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가. 모든 폐암 사망의 71%, 만성호흡기 질환의 42%, 심혈관질환의 10%가 흡연에서 기인하며, 담배에는 60여종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있음
- 나. 정부에서도 담배 값 인상 및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금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흡연율 감소는 미미한 수준으로 금연에 대한 획기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한 실정임.
- 다. 이에 금연 성공자에게 일정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금연성공률을 높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412호

- 가, 목적(안 제1조)
- 나, 금연 등록 절차(안 제2조)
- 다. 지원금 지급 기준(안 제3조)
- 라. 금연성공 여부 판정 기준(안 제4조)
- 마. 지원금 지급 (안 제5조)

4. 참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2, 8 ~ 2, 28,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년 2월 28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 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 장수군보건의료원(보건사업 과장)
- 2) 팩 스: 063-351-5010
- 3) E-mail: jkjgodqhr@korea.kr
- 4)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자치법규-의견달기
- 5) 직접방문
-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다.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라. 그 밖에 참고 사항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장수군 금연장려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전화번호: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9	—— 리	견	비고
	찬성	반대				

장수군 규칙 제 호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 등록 절차)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 조에 따른 등록 및 재등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금연성공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여 금연등록카드(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를 작성·제출하고, 대면상담·호기일산화탄소측정·요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군수는 전호의 신청에 따라 금연정보시스템에 금연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호기일산화탄소측정 결과 7ppm 미만 · 요검사 결과 니코틴 음성반 응이 나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2018년 4월 2일 전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금연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기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등록하여야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지원금 지급 기준)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금연성공 여부 판정 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성공 여부의 판정기 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의 기준을 충족한 금연성공자에

게 금연등록카드에 기재한 연락처 또는 주소지로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 확인 검사결과 통지서를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연성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성공 지원 금 지급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 등록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2018년 4월 2일 이후에 금연클리닉에 등록 또는 재등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보

군

[별표 1]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 기준

금연성공 기간	금연성공 지 원 금	비고
12개월	20만원	
18개월	50만원	
24개월	80만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성공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 1. 등록 또는 재등록 당시 만 19세 이상일 것
- 2. 등록 또는 재등록한 날부터 금연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소를 둘 것
- 3, 12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할 것
- 4. 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한다.

[별표 2]

금연성공 여부 판정 기준

			검사 내용							
금연	대면상담		호기 일(난화탄소 측정	2	오검사	모	발검사		
기간		검사기간	검사 횟수	금연성공 기준	검사 횟수	금연성공 기준	검사 횟수	금연성공 기준		
4주	대면상담 (1회 이상)	7일 이내	1회	7PPm 미만	-	_	-	-		
12주	대면상담 (1회 이상)	7일 이내	1회	7PPm 미만	_	_	_	_		
6개월	대면상담 (1회 이상)	7일 이내	1회	7PPm 미만	1회	음성	_	_		
12개월	대면상담 (3회 이상)	30일 이내	1회	7PPm 미만	1회	음성	1회	2ng미만		
18개월	대면상담 (3회 이상)	30일 이내	1회	7PPm 미만	1회	음성	1회	2ng미만		
24개월	대면상담 (3회 이상)	30일 이내	1회	7PPm 미만	1회	음성	1회	2ng미만		

비고

- 1. 금연기간 중 대면상담 횟수를 충족하고,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금연성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
- 2. 금연기간의 기산점은 등록일 및 재등록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최후의 주 또는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3. 검사기간은 금연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4.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및 요검사 결과 금연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검사를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5. 모발검사는 재검사를 하지 않으며, 국립암센터 모발 검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금연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 6. 모발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머리카락이 없는 경우, 백발, 염색머리 등) 또는 모발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모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연기간 $6\sim 24$ 개월까지 2개월에 1회씩 금연클리닉실을 방문하여 호기일산화탄소측정 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 확인검사 결과 통지서

대 상 자	평		생년	년월일(성별)		(남, 여)
7	추 소					
검사결과	- 금연기간	닉 등록일 : : □12개월 닉 금연 검시	, 🗆 18개	월, 🏻 🗆 24개)
- n e - n	일산화탄	소 측정	يم.	,검사	모발	·검사
	기준수치	검사결과	기준수치	검사결과	기준수치	검사결과
	7 <u>PP</u> 메만	P.P.m.	음성		2 <u>ng</u> 미만	
						38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 확인 검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인)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걸시 세4오	시역]			(료인)
	<u> </u>	급연성공 지원금 지	급 확인서	
[작성자린	<u>박]</u>	200 200	65	
그여서고지	성 명	생년월일 (정별)		(남, 여)
금연성공자	등록일	금연기간	□12개월, □187	H월, □24개월
주 소				
전 화 번 호	자 택	H. P.	2000	
		H면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 -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혼		
장수군수 국		(작성자) 성명 : 년 월	(서명 또는 날인) 일	
<u>용무단포 '</u>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민등록표 등·초본 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	정보 공동	등이용 및 금융정보(입	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 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2003 20030 20		네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분		33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5		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 또합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		
in legicistati		·필요 시 기재사항)		15 0 1 31 3 101 3 3 1
(🏻 주민-	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민원인		(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금융 가능한 계3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 사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	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니다.
(은	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민원인		(서명 또는 인)
		성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리		H하지 아니합니다.		
- 5 - 3 - 3 - 3 - 3 - 3 - 3 - 3 - 3 - 3	록 일	년 월 일 금	금연성공 기준일	년 월 일
확인 금연	년기간 🗆 1:	2개월 □18개월 □24개월 급	금연 검사 결과	□성공 □실패
	령기준 □민 급 액			□충족 <u>□미충족</u>)만원
상기 사실을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	는 날인)
	V 4 E 5 45		(A) O T	

구

(뒷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안내

장수군보건의료원에서는 금연클리닉 금연성공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있어 대상자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장수군보건의료원 금연 클리닉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 신청에 따른 지급대상 확인 및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금연성공 기준일까지의 장수군 거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열람 및 지원금 지급대장 구축 자료 활용
- ▷ 이외의 수집된 개인정보 :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관련 전반에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한 후 (5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장수군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 처리가 불가함.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상기의 수집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 공고 제 2019 - 호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장수군수

1. 자치법규명: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2. 개정이유

금연 중도 포기자가 금연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재등록 할 수 있어 재등록자의 불편함을 초래 할 우려가 있고, 금연성공 지원 금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함

3. 주요내용

- 가. 제4조(금연성공 지원금의 지급)제3항
 - -금연 중도 포기자의 재등록에 필요한 기간 경과 조건 삭제
- 나. 제4조제4항 신설
 - -금연 성공지원금의 지급은 평생 1회에 한하여만 지급

4. 참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2, 8 ~ 2, 28,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 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 장수군보건의료원(보건사업 과장)
- 2) 팩 스: 063-351-5010
- 3) E-mail: jkjgodqhr@korea.kr
- 4)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자치법규-의견달기
- 5) 직접방문
-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라 그 밖에 참고 사항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장수군 금연장려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 번호: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		·

장수군 규칙 제 호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일부개정(안)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마지막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지원금의 재신 청이 가능하며, 금연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연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금연클리닉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를 "금연클리닉에 재등록 할 수 있으나, 기 지원받은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급하 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지원금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4조(급연성공 지원급의 지급) ③금연 지원금을 한번이상 수령하였으나 중도에 흡연 을 하게 되어 금연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지원급 수령일로부터 5년이 경고해야 지원급의 재산청이 가능하며, 급연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 에서 급연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금연클리닉 등록 일로부터 2년이 경고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각 호의 지원금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금연 지원금을 한번이상 수령하였으나 중도에 흡연을 하게 되어 금연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지원금의 재신청이 가능하며, 금연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연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금연클리닉 등록	③
	(신 설)	④ 제1항 각 호의 지원금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장수군 고시 제2019 -16호

산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수립 고시

장수군 산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장수군수

1. 사업의 목적

○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위 치: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일원
-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어울림마당, 흥겨운배움터, 산서시장활성화사업,
 - 호룡보루 추모공원, 육영당 학습공간

- 경 관 개 선 : 안전한 보행환경, 순환산책로, 중심가로 간판 및 입면정비
- 역량강화사업: 주민교육, 컨설팅 등
- 3. 사업비: 5.960백만원(지특4,172 도비806 군비982)
- 4.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4개년)
- 5. 사업의 효과
-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로 다양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지로 서의 도약
-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관 개선으로 주민의 생활 만족도 향상
- 6. 사업시행자: 장수군수(위탁 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 7.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063-350-22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산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승인서

1. 사업 개요

○ 위 치: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일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4년)

○ 주요사업 내용

가. 기초생활기반: 어울림마당. 산서시장활성화사업. 육영당학습공간.

흥겨운배움터 호룡보루추모공원

나 지역경관개선 : 안전한보행공간, 간판 및 입면정리, 순환산책로, 철거공사

다. 지역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라, 제 경 비: 기본계획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독비, 사업관리비, 기타

부대비용

○ 소요사업비 : - 기본계획 : 5,960백만원(국비 4,172, 도비 806, 군비 982

자부담(34.000)외서)

세부설계: 5,960백만원(국비 4,172, 도비 806, 군비 982

자부담〈16.200〉외서)

2. 사업추진경위

○ 일괄계약체결 : 2017, 02, 11(장수군,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 지역역량강화 착수 : 2018, 03, 13((사)농산업전략연구원)

○ 기본계획수립 승인: 2018, 07, 10(장수군)

○ 세부설계 : 2017, 05, 07 ~ 2018, 11, 16((사)농산업전략연구원 외 2개사)

3. 향후 추진계획

○ 사업 발주 및 착공 : 2019. 1

○ 사업 준공 : 2020, 12, 20

4. 종합개발 계획

부 분 별	규모및내용		시 행 계 획		비고
丁 世 钽	(기 본 계 획)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114
합 계	18 건	0 건	19 건	0 건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5건 · 어울림마당 · 산서시장활성화사업 · 육영당학습공간 · 흥겨운배움터 · 호룡보루추모공원		5건 · 어울림마당 · 서시장활성화사업 · 육영당학습공간 · 흥겨운배움터 · 호룡보루추모공원		
나. 지역경관개선 · 안전한 보행공간 · 간판 및 입면정리 · 순환산책로 · 철거공사	3건 · 안전한 보행공간 · 간판 및 입면정리 · 순환산책로		4건 · 안전한 보행공간 · 간판 및 입면정리 · 순환산책로 · 철거공사		
다. 주민역량강화	5건 · 교육 · 컨설팅 · 홍보마케팅 · 정보화 · 마을경영지원		5건 · 교육 · 컨설팅 · 홍보마케팅 · 정보화 · 마을경영지원		
라. 관리비 등	5건 · 기본계획비 · 세부설계비 · 공사감독비 · 사업관리비 · 기타부대비용		5건 · 기본계획비 · 세부설계비 · 공사감독비 · 사업관리비 · 기타부대비용		

5. 연도별 투자 계획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이후 합 계 480,000 952,000 2,485,000 5,960,000 2,043,000 1. 국 비 4,172,000 336,000 666,000 1,740,000 1,430,000 2. 도 비 72,000 129,000 298,000 307,000 806,000 3. 군 비 982,000 72,000 157,000 447,000 306,000 4. 〈자부담〉 ⟨34,000⟩ ⟨34,000⟩

(단위: 천원)

※ ⟨ 〉는 외서자부담

6. 사업비 수지예산서

가. 수 입

(단위: 천원)

구 극	분	기본계획(A)		시행계획(B)				
_ ~ `	正	기근세력(A)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비고	
÷1 -	11	⟨34,000⟩	⟨16,200⟩	(0)	⟨16,200⟩	(0)	<>	
합 :	계	5,960,000	5,960,000	_	5,960,000	_	외서 자부담	
ㅁ보	조	5,960,000	5,960,000	_	5,960,000	_		
-국	비	4,172,000	4,172,000	_	4,172,000	_		
- 지 방	납비	1,788,000	1,788,000		1,788,000	_		
- 자부	나담	⟨34,000⟩	⟨16,200⟩	(0)	⟨16,200⟩	⟨0⟩		

나. 지 출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A)	시행계획(B) 승인				
丁 世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34,000⟩	⟨16,200⟩		⟨16,200⟩		
입 세	5,960,000	5,960,000		5,960,000		
○ 기초생활	3,995,000	4,292,663		4,292,663		
- 어울림마당	500,000	594,284		594,284		
- 산서시장활성화사업	2,240,000	2,646,397		2,646,397		
- 육영당학습공간	441,000	346,610		346,610		
- 흥겨운배움터	490,000	372,732		372,732		
- 호룡보루추모공원	324,000	332,640		332,640		
△ 기선거리계시	⟨34,000⟩	⟨16,200⟩		⟨16,200⟩		
○ 지역경관개선	531,000	412,097		412,097		
- 안전한보행공간	383,000	123,580		123,580		
- 간판 및 입면정리	⟨34,000⟩	⟨16,200⟩		⟨16,200⟩		
 – 간판 및 입면정리	136,000	145,800		145,800		
- 순환산책로	12,000	7,186		7,186		
- 철거공사	_	135,531		135,531		
지역역량강화	(0)	(0)		(0)		
○ 시역역당강와 	727,000	613,000		613,000		
- 교육	487,000	369,000		369,000		
- 홍보마케팅	124,000	124,000		124,000		
- 컨설팅	30,000	30,000		30,000		
- 정보화	3,000	7,000		7,000		
- 마을경영지원	83,000	83,000		83,000		
○ 관리비 등	707,000	642,240		642,240		
- 기본계획비 163,00		139,608		139,608		
- 세부설계비 118,000				104,439		
- 공사감독비 305,000				258,676		
- 사업관리비	71,000			89,517		
- 부대비 용	50,000	50,000		50,000		

7. 사업위치도 및 조감도

사업 위치도



사업 조감도



※ 산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편입 토지 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²)		토지소유자	기타
읍면	리동	시킨	공부	이용	전 체	편입	工八工开八	714
합	계	13필지			3,205	3,205		
산서	동화	839-30	답	답	1,875	1,875	사유지	
산서	동화	182-2	대	대	288	288	사유지	
산서	동화	174-4	대	대	119	119	사유지	
산서	동화	121	대	대	352	352	사유지	
산서	동화	121-2	대	대	52	52	사유지	
산서	동화	121-3	대	대	17	17	사유지	
산서	동화	121-4	대	대	61	61	사유지	
산서	동화	129-3	대	대	76	76	사유지	
산서	동화	129-9	대	대	33	33	사유지	
산서	동화	129-14	대	대	35	35	사유지	
산서	동화	839-71	대	대	89	89	사유지	
산서	동화	129-11	대	대	138	138	사유지	
산서	동화	129-12	대	대	70	70	사유지	

장수군 공고 제2019-126호

장수군 공인 등록(폐기) 공고

장수군 공인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공인등록(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장수군수

- 1. 등록(폐기)사유: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폐지로 인한 공인 폐기
- 2. 폐기년월일 : 2019. 2. 7.
- 3.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규격	인 영	비고
폐기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출납원인	1,8cm 정방형		

장수군공고 제 2019 - 130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02월 07일

장수군수

○ 지정일자 : 2019년 02월 08일

○ 지정내역

위 치	도로길이	도로너비	도로면적	이해관계인	비고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705-38	265.00m	4.00m	997.00m²	김경자, 송채린	동의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